

[첨부]

##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국회운영위원회)

-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

### 1.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직권조사의 건

#### ◎ 배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5명은 2018. 2. 8.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9. 8. 8. 직권조사에 따른 아래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하였으며, 2019. 9. 9. 진정인들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요지]

- 진정인: 민변 TF 소속 변호사 5인
-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 진정취지
  - 1)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집단입국 계획 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종업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다.
  - 2) 피진정인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과 신원 관련 사항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의 초상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로서, ① 2016. 4.경 집단 입국 이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유관기관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②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로서 북의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것, ④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 ⑤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배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진행 경과]

2018. 2.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2018. 5. 10. jtbc ‘스포트라이트’ 보도)

2018. 7. 3. 진정인 의견서 접수

2018. 7. 4.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2018. 7. 18. 민변 TF 및 시민사회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2018. 7. 26.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정

2019. 6. 26. 민변 TF 신속한 조사결과발표 촉구 성명발표

2019. 8. 8. 직권조사에 따른 결정

2019. 9. 9. 진정인들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요지]

##### 주문

1.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또는 명확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통일부장관에게,

가. 집단입국 사실 언론공표에 대해 그 과정과 문제점을 밝힐 것

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시 언론 비공개원칙을 엄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와 사생활의 비밀 및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가. 언론공표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있는 자에 대해, 형법 제123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 5.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진정인들의 주장은 기각한다.

◎ **질의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의 조사과정과 조사완료 시점, 침해구제제2위원회 심의 과정과 심의완료 시점 및 결정문 작성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2018. 2. 진정을 제기한 후 1년 6개월 만에 조사결과가 뒤늦게 발표된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비독립적, 정치적 고려가 없었는지

나.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검찰 고발사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 국가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입국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의 협박 및 회유 등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지배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담당 직원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기록은 일부만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제되거나 멸실<sup>1)</sup>되어 확인이 어려움. 지배인과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강요와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진정인과 지배인의 주장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 하였는바,

- (1) 조사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과 지배인의 통화녹음 파일이 보존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멸실 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했다면, 이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하였었다는 점, 국군정보사령부의 업무수행의 밀행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오히려 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2)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기관이 국군정보사령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조차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3)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이 지배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검찰에 강제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4조)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더욱이 2018년 6월 고소까지 된 기획탈북 범죄

1) 지배인과 담당 직원간 통화녹음 파일은, 입국 이후 담당 직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수차례 방문하는 등 이를 백업할 시간이 없었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휴대전화를 파괴하고 한강에 버려 파일을 보관할 수 없었으며, 대포폰이어서 통화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함.

협의를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이송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권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5명의 종업원을 직접 대면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작성한 조사기록 확인서 등 자료를 확인하여 자의에 따라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7명에 대해 단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작성된 진술서 기재 내용 등을 이유로 5명과 달리 ‘자의입국’ 하였다고 보인다고 달리 판단하였는바,

(1) 이 사건 종업원들이 중국 류경식당을 떠나 3일 만에 입국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안전하게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과정, 그리고 입국 이후에 곧바로 입국 사실과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된 상황에서 종업원 전원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거나 국가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정, 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는 시간동안, 이 사건을 조사한 유일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결과이고 모순된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18. 5.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를 통해 일부 종업원들의 육성 증언이 보도되고, 또한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일부 종업원들의 면담 과정에서도 자의에 의한 입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키타나 보고관 또한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에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충분히 존재하는 증거는 외면한 채 직접 조사하지 못한 7명의 종업원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5.경 한국으로의 입국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자의에 의한 입국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한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3) 4명의 여 종업원들은 JTBC 인터뷰에서 위 4명을 포함한 5명의 종업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자유의사’ 에 의한 탈북이 아님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가 휴대폰, 이메일 등 다수의 물증을 파기해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피해자 5명의 강제납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나머지 종업원 7명 또는 종업원 다수가 한국행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비약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자기 모순적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지

(4) 반인륜적, 반인도적, 반인권적 납치유인 피해자의 증언에 해당하는 5명의 피해 종업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불이익을 무릅쓰고 한 증언을 묵살하고, 물증도 없이 사건을 왜곡한 국가인권위원회 이 사건 처리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생이 뒤바뀐 여 종업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탈북이 아니라 증거인멸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신속히 요청하였어야 했고, 기획탈북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였으니 수사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참 뒤늦은 결정문에서라도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바. 2016년 4월 5일 이래 12명의 종업원들은 북측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낮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고립과 유기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과 트라우마와 혼란한 심리상태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사. 12명 종업원들이 단순 탈북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범죄의 피해자로 판단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 2.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 ◎ 배경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a)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기관은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들을 가족과 재회시키고 신속하게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검찰기관 및 기타 관련 공무원 및 기관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모든 관계자, 기타 기관, 정치 지도자 또는 중국 Ningbo에서 12명의 젊은 여성 식당 종업원을 집단 납치한 후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서울로 이송하는 음모에 가담했던 허강일을 포함한 대표자 및 개인을 그들의 불법 구금과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c) 이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납치와 가족, 사회와 국가로부터의 정당하지 못한 분리에 의해 야기된 정신적 충격, 두려움과 고뇌, 그리고 그들의 완전히 붕괴된 그들의 삶과 돈을 벌고 정직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12명의 젊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 d)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본질과 정신의 맥락에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언에 의해 양

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범해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우선할 가치가 있다.

d) 만일 가족과 재회한 후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이유로 남한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종업원이 있을 경우, 이 결정은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처음 재회한 후에, 양쪽 정부가 협력하는 것에 의해 허용된다. 그들의 삶에서 정상 상태가 회복된 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 12명의 여종업원들의 개인적인 결정은 어느 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결정” 또는 “정치적 망명”으로 해석되거나 미디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상황의 희생자이며, 그들의 가족과 사회를 돕기 위해 중국의 농보에서 살고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납치되고 대한민국(남한)으로 끌려와 두려움에 3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 없이 그들의 가족과 국가의 보호 없이 지속적인 감시 하에 살아야 했다. 인간 본성과 그들을 보호하는 기관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회복되어야만 한다.”

## ◎ 질의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국제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나. 12명의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재회, 재결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8. 26. 국제진상조사단과 면담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2019. 8. 28. 국제진상조사단은 한국 진상조사활동의 결과를 담은 중간보고서 발표에서 “본 국제진상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종업원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을 알렸습니다. 본 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 발표의 지연 그 자체가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른 결정문 내용과 달리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는 강제납치 결론을 내렸고, 향후 2020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보고서가 보고될 예정인데, 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직권조사에 따른 결정문 내용에 대하여 유엔 등에서 국제진상조사단과 만나 상호 검증할 의향이 있는지